

2026. 6.

# 중국 법원, '동인 작품 제1호 사건' 9년 만에 조정으로 종결

국회입법조사처  
백지연

## 1. 사건의 개요

사건의 발단은 작가 '강남(江南, 필명)'이 집필한 학원 소설 '이곳의 소년(此间的少年)'이다. 해당 소설은 김용(金庸)의 '사조영웅전(射雕英雄传)', '천룡팔부(天龙八部)', '소오강호(笑傲江湖)', '신조협려(神雕侠侣)' 등 여러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이름과 관계, 성격과 유사하였으며, 2002년 초기 출판본에는 "사조영웅의 대학 생활(射雕英雄的的大学生涯)"이라는 부제가 사용되었다.

이에 김용은 2016년 7월 법원에 해당 작품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행위 중지, 재고 도서 폐기, 공개 사과와 영향 제거, 손해배상 500만 위안(한화 약 10억 8,000만 원) 및 합리적 비용 20만 위안(한화 약 4,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출판사와 콘텐츠 회사에는 연대책임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이후 9년에 걸쳐 중국 내 출판업계와 문학 창작계 전반에서 이른바 '동인 작품1) 제1호 사건'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아왔다.

## 2. 사건의 경과

### 1) 1심 법원의 판단

광저우시 텐허구 인민법원(广州市天河区法院)은 두 작품 사이의 인물 이름·관계·성격·줄거리가 추상적 수준에서 비슷할 뿐, 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감상 경험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보아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002년 초판의 부제 사용에 대해서는, 김용 작품의 영향력에 기대어 독자를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분명한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여 누적 인세 560만 위안(한화 약 12억 1,000만 원)의 30%인 168만 위안(한화 약 3억 6,300만 원)과 변호사 비용 20만 위안(한화 약 4,3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 2) 2심 법원의 판단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은 1심과 달리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을 모두 인정하였다. 법원은 강남에게 침해행위 중지, 신문 공고를 통한 공개 사과, 168만 위안(한화 약 3억 6,300만 원) 배상과 20만

1) 동인 문학은 기존 작품의 등장인물·세계관·설정 등을 차용하여 팬이나 제3자가 새롭게 창작한 2차 창작 문학을 의미함

위안(한화 약 4,300만 원) 비용 지급을 명령하였고, 출판사와 콘텐츠 회사에는 그 가운데 33만 위안(한화 약 7,100만 원)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였다.

### 3. 주요 쟁점

#### 1) 인물의 이름·관계·성격이 저작권법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인물의 이름·관계·기본 성격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인지 여부다. 통설은 등장인물이 줄거리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줄거리를 통해 구체화되지 않은 캐릭터는 '아이디어'에 머문다고 본다. 그러나 광저우지식재산법원은 이 사건에서 특정한 성격·관계·서사가 결합된 등장인물이라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구체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가령 등장인물 중 하나인 '교봉(乔峰)'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방주, 뛰어난 무공, 특정한 인간관계와 서사'를 아우르는 복합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 2) 사건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작의 인물·성격·관계와 함께 줄거리까지 가져다 쓴 경우라면 침해의 가능성이 크지만, 인물 이름과 단순한 성격·관계만 표식처럼 빌려 쓴 경우라면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맞는다. 학계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을 요소별로 따지기보다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 3)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유명 작품의 인기에 편승해 동인 작품을 알리거나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이른바 '무임승차(搭便车)'로 평가되어 경쟁법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강남이 2002년 초판에 '사조영웅의 대학생살'라는 부제를 붙인 행위를 두고, 김용 작품의 영향력을 빌려 독자를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아 상업적 도덕에 어긋나는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였다.

### 4. 광둥성 고등법원의 조정·화해

2심이 끝난 뒤에도 분쟁은 지속되었고, 양측은 광둥성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재판부는 동인 창작의 법적 경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침해 중지의 구체적 방식, '영향 제거'의 실현 방법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주재하였다.

그 결과 양측은 다음과 같은 포괄적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문제된 행위를 '표절'로 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원고는 저작권에 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사전 허락 없이 창작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이곳의 소년'을 앞으로 기존 형태대로 재출판하지 않으며, 재출판할 경우에도 김용 작품의 독창적 인

물 요소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2002년 출판사가 사용한 부제 ‘사조영웅의 대학생활’는 부정경쟁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 2심에서 확정된 배상금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추가 변경 요구는 없으며,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기존 1·2심 판결은 효력을 잃는다. 이로써 9년간 이어진 분쟁은 2025년 9월 19일 당사자 간 전면 화해로 마무리되었다.

## 5. 사건의 의의

동인 창작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경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은 법조계와 문화산업계, 일반 대중 사이에서 폭넓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조정은 창작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구현한 사례로서, 앞으로 유사한 분쟁을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문제의식은 동인 창작이 인터넷 문학과 함께 급속히 성장하면서 비상업적 창작을 묵인 하던 기존의 불문율만으로는 더 이상 원작자와 동인 창작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원작에 담긴 독창적 요소를 후발 창작자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율이 시급해진 셈이다. 이번 조정은 표절이라는 낙인을 씌우지 않으면서도 사전 허락 없는 차용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재출판 시 원작의 독창적 인물 요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측의 이익을 절충한 해법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광둥성고등법원 리옌(李燕) 판사는 “이번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그 효력은 이 사건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동인 작품이 곧 저작권 침해인가’라는 물음에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인 작품의 침해 여부를 가릴 때에는 우선 원작과의 유사성이 아이디어인지 표현인지를 먼저 구별하고, 같은 표현이 원작자의 독창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다음, 해당 이용이 공정이용 등 비침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참고 자료

- [https://www.gdcourts.gov.cn/xwzx/fayuanxinmeiti/content/post\\_1843458.html](https://www.gdcourts.gov.cn/xwzx/fayuanxinmeiti/content/post_1843458.html)
- [https://www.iprchn.com/cipnews/news\\_content.aspx?newsId=138118](https://www.iprchn.com/cipnews/news_content.aspx?newsId=138118)